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1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1/7	관리부서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본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원과 본교에서 연구활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함은 인간 또는 인간의 조직 등 인체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개인의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연구"란 연구개발, 검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하는 체계적 조사를 말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대학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1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2/7	관리부서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구성) 본 대학의 연구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장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에 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로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내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③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⑦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1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3/7	관리부서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내용은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1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4/7	관리부서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제14조(예비조사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의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과반수이상 포함시키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교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5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통지서를 통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부정행위 등의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할 의무를 진다.

③ 제보자가 제보 이후의 조사,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총장은 부정행위 등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②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등의 조사,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등에 대한 혐의는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엄수)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직원은 그 직에 종사하거나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위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1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6/7	관리부서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2. 조사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본조사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중 부정행위 등에 해당된다는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때에는 해당자를 심사에서 배제하며 임용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지원기관에 대한 통보)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12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7/7	관리부서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을 준용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